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임시총회 회의자료



경 상 북 도 의 회

(정책연구위원회)

목차

❖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임시총회 개최 계획	5
--	---

❖ 주요 안건

안건1)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11
안건2)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13
안건3)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지명	14
안건4)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15

❖ 붙임

붙임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경과	17
붙임2) 주요활동개요	
2-1)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19
2-2)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21
붙임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5
붙임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31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임시총회 개최 계획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I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9. 13(목) 10:00~10:5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지하1층)
- 참석대상 : 30명 정도
 - 의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15명, 관계 공무원 등
- 주요안건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지명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II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분	내 용
'18.9.13 (목)	~10:00		개 회
	10:00~10:02	2	국민의례
	10:02~10:07	5	정책연구위원 위촉장 수여(의장) ※사진촬영
	10:07~10:12	5	의장 인사말씀
	10:12~10:22	10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10:22~10:32	10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말씀
	10:32~10:50	18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10:50~		폐 회

III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임기 및 회의

- 구 성 : 21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의장 추천 도의원 : 3명
 -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추천 도의원 : 각 2명씩 12명
 - 외부전문가 : 추후 2019년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따라 각 1명씩 위촉
※ 도의원 15명,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 임 기
 - 도 의 원 : '18. 9. 13 ~ '20. 6. 30(2년간)
 - 외부전문가 :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1년간)
- 회 의 : 정기회와 임시회
 - 정기회 : 연 1회 개최
 - 임시회 :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IV

위원장 등 선출

- 선출시기 :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18. 9. 13)
- 선출방법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1명)
 - 부위원장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1명)

V

위원(위촉 대상자) 명단

○ 위원회별

위원회별 인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비고
계(15명)	3명	3명	3명	2명	2명	2명	

○ 위원(위촉 대상자)명단

구 분	상임위원회	출신지역	성 명	비 고
의장 추천 (3명)	기획경제위원회	예천	도기욱	자유한국당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배진석	자유한국당
	문화환경위원회	포항	김종영	자유한국당
상임 위원회 추천 (각2명)	기획경제위원회 (2)	구미	김득환	더불어민주당
		영천	박영환	자유한국당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	구미	김상조	자유한국당
		비례	박미경	바른미래당
	문화환경위원회 (2)	비례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채아	자유한국당
	농 수 산위원회 (2)	영천	이춘우	자유한국당
		구미	김준열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2)	칠곡	김시환	더불어민주당
		상주	김진욱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2)	경산	조현일	자유한국당
		구미	정세현	더불어민주당

| 주요 안건 |

- 안건 1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 안건 2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안건 3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안건 4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위원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 위촉 대상자 명단

구분	기획 경제	행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비고
계	3명	3명	3명	2명	2명	2명	
위 원 (15명)	김득환 (구미)	김상조 (구미)	김영선 (비례)	이춘우 (영천)	김시환 (칠곡)	조현일 (경산)	상임위 추천
	박영환 (영천)	박미경 (비례)	박채아 (비례)	김준열 (구미)	김진욱 (상주)	정세현 (구미)	
	도기욱 (예천)	배진석 (경주)	김종영 (포항)				의장 추천

위 축 장

○ ○ ○ 위원회

위원 ○ ○ ○

귀하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18년 9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018년 9월 13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① 관련법규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 원 장

- 선출인원 : 1명
- 선출방법 : 위원중 호선
- 역 할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 총괄

※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진행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지명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하고자 함.

① 관련법규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부위원장

- 선출인원 : 1명
- 선출방법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
- 역 할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① 구성 및 임기

- 구 성 : 21명 이내(도의원 15명, 외부전문가)
 - 도의원 : 15명(의장 추천 3, 상임위원장 추천 각 2명 / 12명)
 - 외부전문가 : 추후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따라 각 1명씩 위촉
- 임 기
 - 도의원 : '18. 9. 13 ~ '20. 6. 30(2년간)
 - 외부전문가 :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1년간)

② 위원회 기능

-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운영 심의
-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 및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요활동

- 정책연구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정책연구 관련 현안논의 및 의원 연구단체 지원활동
 -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과 운영방안 논의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심의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심사
 - 정책연구위원회 소관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
-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방향 모색
 - 주제발표 및 토론, 현장 방문 등
- 그 밖에 다양한 분야 정책연구를 통한 결과보고서 발간 등

4 당면사항

-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접수·마감 : ~10. 2(화)까지
 - 연구활동계획서 등 제출 : ~10. 2(화)까지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 10. 15(월)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등 15명, 관계 공무원 등 참여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 10월 말~11월 초
 -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및 2019년도 구성되는 연구단체 대표 등 참여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경과

'06. 8. 1	의정연구회 발족
'07. 7. 20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지원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
'08. 3. 13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의정연구위원회 도입방안 검토
'08. 3. 17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 김수용 의원 외 20인
'08. 5. 29	동 조례안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08. 6. 18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 재의요구
'08. 6. 30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시 동 조례안 수정안 가결
'08. 9. 8	경상북도의회 제1기 의정연구위원회 출범
'09. 4. 26	동 조례안 일부 개정, 의정연구위원회를 정책연구위원회로 개칭
'09. 9. 8	정책연구위원회 제2기 위원회 출범 및 정기총회 개최
'10. 10. 25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10. 11. 15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정책연구위원회 제3기 위원회 출범 및 정기총회 개최
'11. 3. 30	입법정책 세미나 개최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방향 토론
'12. 2. 8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12. 10. 4	정책연구위원회 제4기 위원회 출범
'12. 12. 5	2012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3. 2. 1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방향 워크숍
'13. 3. 27	과제연구활동 발표 연찬회
'13. 6. 27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지역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간담회
'13. 9. 25	지방의회 인사권 및 의원보좌관제도 현황과 방향에 대한 워크숍

'13. 9. 27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제도 도입 등)
'13. 10. 2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13. 11. 22	2013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3. 12. 9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4. 6.	2014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4. 8. 25	정책연구위원회 제5기 위원회 출범
'14. 8. 28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영남대학교)
'14. 11. 6	의회제도개혁 토론회(EXCO)
'15. 3. 16	정책연구위원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15. 10. 21	2015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15. 12.	2015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5. 12. 11	2015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6. 4. 19	2016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16. 5. 3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이전 기념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개최
'16. 8. 25	정책연구위원회 제6기 위원회 출범
'16. 10. 6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개최
'16. 12. 16	2016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6. 12.	2016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7. 2. 23	2017년 정책연구위원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17. 12. 15	2017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7. 12.	2017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8. 8.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개요

●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기 (2014.8~2016.6)	도기욱	조주홍	김수용,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박문하, 안희영, 이운식, 이진락, 정영길, 최병준, 황병직, 황재철
6기 (2016.8~2018.6)	정영길	조주홍	곽경호, 김위한, 김지식, 남진복, 남천희, 오세혁, 윤종도,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흥희, 장용훈, 정상구

● 정책연구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일자	내용	비고
2014	8.25	2014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	
	8.28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 • 지방자치현주소와 미래과제(임승빈 교수) • 민서6기 시대 지방의회 당면과제(최근열 교수) •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하승열 교수) • 지방의회와 주민간 소통증대방안(최승범 교수)	장소: 영남대학교 참석: 323명
	11.6	「의회제도 개혁」 대토론회 •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김순은 교수) •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박기묵 교수)	장소: 대구 엑스코 참석: 150명
	12.9~10	「의원연구단체별 향후 활동 계획 및 활성화 방안」 워크숍	
	12.19	2014년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구분	일자	내용	비고
2015	3.16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최민수 교수)	장소: 도의회 세미나실 참석: 90명
	10.21~2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워크숍	
	12.11	2015년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2.11	2015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2016	4.19~20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 활성화 모색」 워크숍	
	5.3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이전기념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 부활 25주년 지방자치 당면과제(홍준현 교수) • 경북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김광주 교수)	장소: 동락관 참석: 600명
	8.25	2016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	
	10.6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최병호 교수)	장소: 도의회 세미나실 참석: 30명
	12.16	2016년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2.16	2016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2.19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곽도 교수) •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과 문제점(한재용 지부장)	장소: 도의회 세미나실 참석: 100명
2017	2.27~28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 계획 및 활성화 방향」 워크숍	
	12.15	2016년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2.15	2017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개요

● 2015년 의원연구단체 구성

구 분	연구주제	대표	회원	외부 전문가
문화산업정책 연구회	문화산업정책 연구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이상구	김정숙, 남진복, 남천희, 박문하, 배영애, 배한철, 오세혁, 이정호, 이태식, 이흥희	이정옥 교수
미래농수산 발전연구회	미래 경북농어업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비전을 제시함	한창화	고우현, 나기보, 박권현, 박영서, 박정현, 박현국, 안희영, 윤종도, 이동호, 이운식, 이진락, 장용훈	이상호 교수
미래창조 연구회	경북의 미래창조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정책대안을 제시함	김수용	강영석, 구자근, 김위한, 김종영, 김창규, 도기욱, 박용선, 배진석,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홍진규, 황이주, 황재철	최근열 교수
산림정책 연구회	산림산업발전 연구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 및 향상	김봉교	곽경호, 김수문, 김인중, 김희수, 이수경, 장두욱, 최병준, 최태림, 한혜련, 황병직	임원현 교수

● 201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현황

구 분	일자	내용	현장방문
문화산업정책 연구회	4.6~7	경북 문화콘텐츠산업의 방향	전주 한옥마을
	12.3~4	경북 문화자원의 관광산업화 전략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미래농수산 발전연구회	4.20~21	경북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방안	원주 농업기술센터
	12.7~8	경북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방안	부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미래창조 연구회	6.1~2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1.2~3	미래형 도시 구현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림정책 연구회	4.13~14	지역 산림자원 보호 및 활용방안	포항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10.27~28	경북 임산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산청 동의보감촌

● 2016년 의원연구단체 구성

구 분	연구주제	대표	회원	외부 전문가
문화산업정책 연구회	문화산업정책 연구를 통한 발전적 정책 모색 및 대안 연구	이상구	김정숙, 남진복, 남천희, 박문하, 배영애, 배한철, 오세혁, 이운식, 이정호, 이태식, 이흥희	이정옥 교수
미래창조 연구회	경북의 미래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전략 발굴 및 정책대안 연구	김수용	강영석, 김종영, 김지식, 도기욱, 박용선, 배진석, 정영길, 조현일, 홍진규, 황이주, 황재철	최근열 교수
산림비즈니스 연구회	산림비즈니스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방안 연구	곽경호	김봉교, 김수문, 김인중, 김희수, 윤종도, 윤창욱, 이수경, 최병준, 한혜련, 황병직	권태호 교수
해양발전 연구회	경북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한창화	고우현, 나기보, 박권현, 박정현, 박영서, 박현국, 이진락, 조주홍, 장경식	박종수 교수
환경정책 연구회	적극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 연구	이동호	김명호, 김창규, 김위한, 안희영,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최태림	강미아 교수

● 2016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현황

구 분	일자	내용	현장방문
문화산업정책 연구회	6.30~7.1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활성화 연계 방안	삼국유사목판도감소
	10.25~26	공연예술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코미디철가방극장
미래창조 연구회	7.19~20	경북의 창조경제 구현 방향	한국항공우주산업
산림비즈니스 연구회	5.19~20	산림복합경영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	산림약용자원연구소
	10.31~11.1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숲 자원 활용 방안	국립산림치유원
해양발전 연구회	5.24~25	경북 신동해안 발전 전략	영일신항만
	11.24~25	경북 동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
환경정책 연구회	6.30~7.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하천	태화강생태공원
	10.25~26	경상북도 수질오염총량 관리방안	석포제련소

● 2017년 의원연구단체 구성

구 분	연구주제	대표	회원	외부 전문가
산림정책 연구회	산림정책 연구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방안 연구	곽경호	김봉교, 김수문, 김인중, 김희수, 윤창욱, 이수경, 이흥희, 최병준, 황병직	권태호 교수
자연공원 정책연구회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 연구	홍진규	고우현, 김위한, 김지식, 남천희,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오세혁, 윤종도	전영권 교수
지구촌새마을 연구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박권현	박영서, 안희영, 이상구, 장대진, 장영석 조주홍, 조현일, 최태림, 한창화	임재강 교수
환경정책 연구회	적극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통하여 도민 안전한 생활보장 연구	이동호	김명호, 김종영, 김창규, 나기보, 배영애, 배진석, 장두욱, 장용훈, 정상구	이순화 교수

● 2017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현황

구 분	일자	내용	현장방문
산림정책 연구회	6.8~9	지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포항시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자연공원정책 연구회	3.6	팔공산의 범위와 지리적 개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6.5	금오산 도립공원의 개관 및 발전방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9.11	청량산 도립공원의 가치와 발전방향 모색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1.2~3	경상북도 도립공원 보전 및 발전방향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구촌새마을 연구회	7.25~26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	새마을세계화재단
환경정책 연구회	7.17~18	환경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
	10.31~11.1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 모색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2018년 의원연구단체 구성

구 분	연구주제	대표	회원	외부 전문가
산림정책 연구회	도내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및 보전 방안 연구	곽경호	김봉교, 김수문, 김인중, 김희수, 윤창욱, 이수경, 이흥희, 최병준, 황병직	권태호 교수
해양관광 연구회	경상북도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조주홍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나기보, 박권현, 박영서, 박정현, 우세혁, 이동호, 장용훈, 정영길, 한창화	김규호 교수

● 2018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현황

구 분	일자	내용	현장방문
해양관광 연구회	2.22~23	경북 해양관광산업 발전 방향 모색	송도해상케이블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제 정) 2008. 7. 17 조례 제3052호
(일부개정) 2009. 4. 23 조례 제3099호
(전부개정) 2010. 11. 15 조례 제3222호
(일부개정) 2012. 5. 31 조례 제3334호
(일부개정) 2013. 11. 11 조례 제34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
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 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신설 '13. 11. 11>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3. 11. 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 시까지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회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

- 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 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각 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31>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2. 5. 31>

⑤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간) 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용역) 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개정 '12. 5. 31>

② <삭제 '12. 5. 31>

제19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신설 '13. 11. 11〉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13. 10. 31〉

제25조(시행규칙 등) 〈개정 '13. 11. 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3. 10. 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09. 4. 23〉

③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 단체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11. 15 규칙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등록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경사항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활동결과 등의 보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등록부) 입법정책지원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등)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titl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header.